
입 법 정 보

2017-1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
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등 부령 일괄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
3.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5
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6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환경부)	7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9
7.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11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11
1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2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13
12. 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 자치부)	13
13.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4
14.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4
15.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4
16.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5
1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 재정부)	15
18.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6
1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8
20.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9
21.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9
2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9
2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0
2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0
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1
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1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3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3
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5
3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9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0
32.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5
33.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5
3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36
35.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6
3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37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37
3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 관광부)	39
3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9
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0
41.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0
4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1
4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41
4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42
4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3
4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44
4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44
4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5
49. 「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 (안) (농림축산식품부)	46
50.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46
51.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47

5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48
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48
5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49
5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9
56.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50
5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51
5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51
5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2
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2
6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3
6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4
63.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4
6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55
6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55
66.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56
67.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57
6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57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57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12. 26. • 마감일자 : 2016. 2. 6.
- 보건의료 환경변화 등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인력수급이 과잉으로 진행됨에 따라 치과·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인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제2항 제2호, 제9호, 제14호 관련 [별표1] 정원외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개정
1)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10% → 5%) : 치과의사, 한의사

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등 부령 일괄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12. 27. • 마감일자 : 2016. 2. 6.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 16.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나 개별법령별로 일몰규제조항이외에 별도의 입법계획이 없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등 8건의 보건복지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6. 12. 27. • 마감일자 : 2016. 2. 6.
- 현행 공무원연금법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따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법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된 조문들을 공무원재해보상법 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 밖의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안 제25조, 제27조, 제67조)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산입방법 및 소급기여금 납부에 관해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급여환수 미비조항 보완(안 제37조)

수급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 환수가 필요한 경우 실제 반납이 상속인에 의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환수대상을 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급여액에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함

라. 분할연금 신청구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 도입(안 제48조, 제49조)

분할연금 신청의 특례를 두어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신청구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마.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이자 지급(안 제65조)

수사 중 또는 형사재판 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그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바.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안 제83조~제86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12. 27. • 마감일자 : 2016. 12. 30.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 유입되는 방사성물질의 연구, 학술 및 정책

- 수립 목적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운영할 수 있는 해양환경측정망의 종류에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을 추가함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12. 28. • 마감일자 : 2016. 2. 6.
- 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등의 효과를 가진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살생물제 사용 증가로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상 위해(危害)가 우려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살생물제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임. 이에 선진적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위해우려제품 관련 조문(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을 이관하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 및 처벌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 용어 정의 및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제5조)
 - 1) ‘위해우려제품’을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하고,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
 -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시책의 수립 시행,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살생물질의 승인, 살생물제품의 허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안 제6조 ~ 제11조)
 - 1) 생활화학제품의 파악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성분, 배합비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2) 실태조사 생활화학제품과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수입자는 3년마다 시험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검사를 받도록 함.

다. 살생물질의 승인제도 도입(안 제12조 ~ 제23조)

1)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2) 살생물질의 승인기준과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평가 자료, 환경부장관의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

3)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서 유통 중인 살생물질 중에서 신고받은 살생물질은 기존살생물질로 고시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라.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도입(안 제24조 ~ 제33조)

1)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2) 살생물제품의 허가조건과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자가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환경부장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3) 살생물제품 내 모든 살생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질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마.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안 제34조 ~ 제36조)

1) 살생물처리제품은 허가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하고,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자는 살생물질의 명칭, 기능 등을 표시하도록 함.

2) 살생물처리제품 구매자는 살생물처리제품 내에 포함된 살생물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조 수입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바. 자료의 보호와 공유(안 제37조 ~ 제39조)

1) 살생물질의 승인과 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는 10 ~ 15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척추동물을 이용하는 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 시험자료는 공유하도록 의무화함.

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통 관리(안 제40조 ~ 제47조)

- 1)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 등 광고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2) 살생물제품의 오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기 포장 사용을 의무화함.
- 3) 안전기준 표시기준, 승인 및 허가사항의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안전성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4)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이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제조 수입자가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5) 승인 허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함.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12. 28. • 마감일자 : 2016. 2. 6.
- 등록대상인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허가물질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면제받는 용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 고의·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도 폐지, 화학물질 사전등록 제도 도입(제8조 개정)
보고 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중복성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전등록제도를 신설함.
-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제도 폐지(제9조 삭제),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 제도 도입(제10조 개정)
현재는 기존화학물질 가운데 일부만을 등록대상으로 선별·고시하여

기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장기 전망이 곤란하므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제도는 폐지하고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다. 허가물질 지정 및 관리 제도 개선(제25조 개정)

허가물질을 지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가 아닌 면제를 받는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제받지 못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라.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확대(제29조 개정)

등록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서도 등록여부 및 함량에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규정.

마.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제32조 개정)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신고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축적성 물질 등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신고 범위 확대.

바. 과징금 처분(제37조의2 신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미등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7.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6. 12. 28. • 마감일자 : 2016. 1. 2.

○ 국내출장시 여비정산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여비 결제 수단 및 여비 정산 기한을 확대하고 국내 이전시 승강기 이용료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내출장시 여비 결제 수단 확대(안 제8조의2제1항)

국내여행시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

나. 국내출장시 여비 정산 기한 확대(안 제8조의2제2항)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2주일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도록 함.

다. 이사화물 이전시 승강기 이용료 지원(안 별표 5)

국내이전비 지급시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에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에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함.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12. 28. • 마감일자 : 2016. 2. 6.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등 부처별로 상이하게 사용하던 서식을 표준화 및 간소화된 형태로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연구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12. 28. • 마감일자 : 2016. 2. 6.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 및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단위로도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2조의2제10항 내지 제13항 신설)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2)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

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함.

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개선(현행 제12조의2제3항제5호 삭제, 안 제12조의3)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의무사항을 폐지함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의 단위를 연구책임자 단위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단위까지로 확대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유효기간(2년)을 폐지함

다.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대상 범위 확대 및 비공개 항목 명확화 등(안 제18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대상 범위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는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서 정한 비공개 항목으로 비공개 대상 항목을 명확히 함

1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12. 28. • 마감일자 : 2016. 2. 6.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97호)」 제24조의2제1항(' 16.3.29. 개정, ' 17.3.30.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상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동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주민번호 수집 조항 개정
 - 1) 동법 제3조제1항제3호 다목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5.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58호, 2016.12.20. 공포, 2017.1.1. 시행)됨에 따라, 창업·벤처전문 PEF와 관련한 특례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창업·벤처전문 PEF 관련(안 제271조의28 신설)
 - 1) 개정법률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를 신설하고 투자대상기업 경영권 참여 목적 완화 등의 특례를 신설함.
 - 2) 이에 따라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2년) 및 의무 투자비율(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설정하고 펀드재산의 운용방법 등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함

12. 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2. 7.
- 하나의 건물 시설, 개발지구 등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주민과 기업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와 건물 등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13.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학생 선호종목 학교스포츠 클럽 종목개설시 구체적인 비율과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평가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여학생 선호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종목개설시 구체적인 비율 조항 신설(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나.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평가 실시 조항 신설(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14.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16.2.3.)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평가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교부금의 특별지원 내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평가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교부금의 특별지원 근거 조항 신설(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15.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9.
- 주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주정 제조 및 도매업 면허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신청자의 협력 비용 감소를 위하여 면허발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정 제조 시설기준 중 발효조 총용량과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중 저장조 및 탱크로리 용량 기준을 완화함.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면허 신청을 허용하고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모든 면허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다. 의제주류판매 면허 대상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중 신청자 요

건을 명확히 규정함.

라.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정비함.

마.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사카린나트륨을 추가함

16. 관세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9.

○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으로 하며, 통관취급법인이 수출입 신고한 물품을 화주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 등 통관취급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현재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나.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 확대(안 제25조제4항제5호 신설)

통관취급법인 등은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나, 이러한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통관취급법인 등이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물품의 수출·수입 및 반송 신고를 한 후 화주가 해당 물품의 운송을 직접 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1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9.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이행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수출자 등의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도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을 FTA세율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로 늦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안 제10조)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국내 제조·가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6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출자 등의 사망 또는 법인 합병 시 상속인 등의 환급 신청 자격 승계(안 제18조)

수출자 등의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도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안 제30조)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을 당초 환급일의 다음날에서 FTA세율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로 늦춤.

18.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9.

○ 면세점 산업의 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과세관장이 체납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국내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수출자가 가격약속 위반 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을 명확히 하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수출기업등이 보세공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체납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 확대(안 제1조의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체납된 내국세등까지 세관장이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나. 수입신고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과세가격 조정 허용(안 제16조)

수입신고 이후 물품의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에 따라 조정할 경

우 잠정가격 신고를 허용함.

다. 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안 제42조, 제43조 및 제141조의3 외)

위원회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 및 공통 해촉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함.

라.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기간 연장 사유 명확화(안 제66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정하는 잠정조치의 부과기간 연장 가능 사유를 법령에 적시해 알기 쉽도록 함.

마. 덤핑방지관세 가격약속 위반 시 조치사항 명확화 등(안 제68조 및 제69조)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위반할 경우 잠정조치의 적용 기간과 잠정조치 이후 확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방법을 명확히 함.

바.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 수정(안 제95조)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를 편익관세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아프가니스탄과 리베리아를 편익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사.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안 제129조)

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 지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인 반입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함.

아. 관세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 신설(안 제149조의2 신설)

불복청구 시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청구금액 기준 3천만원 미만으로 정함.

자.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안 제192조의3 신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심사시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남용 행위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날부터 5년간 신규특허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차.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 확대(안 제199조)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에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

카.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 상향 입법(안 제237조)

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 및 갱신신청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

타.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기간 연장 사유 추가(안 제239조)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에 대해 무역위원회에 조사가 신청된 경우 통관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파.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품질등에 대한 허위·오인 표시 추가(안 제245조)

품질 등을 허위 또는 오인 표시한 수입물품은 이미 통관이 완료된 후에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도록 세관장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함.

하.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특정장소 반입의무 부과(안 제246조의2 신설)

도난·밀수출 우려가 높거나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 수출 신고 전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도록 함.

거. 로열젤리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 조정(안 별표 2)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로열젤리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간이세율을 인하함.

너.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안 별표 3)

채납자 보유재산 확인 등을 위해 관세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선박·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자료,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동산 관련 자료,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도록 함

1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수협법」 시행(’16.12.1.)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수협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신설하게 되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작성 금융보험기관에 수협은행을 추가

20.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려는 것임
-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탄력세율 0.3%를 적용함

21.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교육세법 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 금전대부업자를 교육세법 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의 금전대부업자와 관련 규정을 삭제함

2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며, 담배에 대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발열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함.
- 나. 친환경 미래 성장 산업인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함.
- 다. 로열젤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 라. 담배에 대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2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 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외국인관광객의 부가가치세 환급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시내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거래가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함

2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 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어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회사법인이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어민의 범위에 추가함.
 - 나.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율 적용대상 유기농어업자재허용물질에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 등 47종을 추가함.
 - 다.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민 등의 범위에 추가함.
 - 라. 어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추진기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추가함.
 - 마.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 임업용 기자재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점적호스(점적테이프 분수 호스 포함), 농업용수처리기를 추가함.

바. 농민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신고시 이·통장의 날인과 확인을 받지 않도록 함.

사. 면세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난방기 등에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를 제외함.

아. 선박 위치 추적 장치가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사용 실적 확인 장치 중 선박프리패스시스템을 선박브이패스시스템으로 대체함.

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인 중견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매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의무자, 제출 내용,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방식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상호합의 신청 거부시 신청인 및 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별보고서 제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

- 1)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인 내국법인으로 함. 다만, 국가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해외 다국적 기업그룹의 국내 자회사 지점에게도 제출 의무를 부여함.
 - 2) 국가별보고서 제출 내용은 국가별 사업활동, 국가별 소득 배분내역 등으로 함.
 - 3)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영어 보고서를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4)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하여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다.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이자율도 정상이자율로 간주하도록 함.
- 라. 상호합의 신청 거부시 그 거부 사실을 신청인 및 계약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함.
- 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개선
- 1) 해외자회사가 10% 이상 투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이 능동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합산과세를 배제하도록 함.
 -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적용이 되는 저세율국 산정시 유효세율 계산을 위한 대상 기간을 명확히 함.
- 바.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방식 및 감면규정을 정비함.
- 1)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토록 조정함.
 - 2) 경미한 착오로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국세·관세간 과세조정을 위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을 2017년 6월30일에서 2022년 6월30일

까지로 5년간 연장함.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를 한도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근로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 나.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를 한도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 대상 자산의 직전연도 과세표준 합산여부는 해당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시범위 확대·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이자상당액 부과방법 등을 구체화 함.
 - 1) 피상속인이 10년간 경영해야 하는 가업의 요건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간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으로 함.
 -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업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중견기업의 요건을 명확히 함.
 - 3)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추정해야 할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간 1000분의 18의 이자율을 가산함.

나.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함.

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전환주식의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구체화 함.

라.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인수인의 범위에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마.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시장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으로 규정함.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시 적용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조정함.

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이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경우 시혜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함.

아.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운용시의 요건, 절차 등을 구체화 함.

1)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이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출연재산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으로 하고, 의무지출의 비율은 100분의 1로 함.

2) 공시대상 범위에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 결과를 추가함.

3)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회계감사 시 적용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제정·운영을 위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신설함.

자. 장애인신탁을 해지하더라도 증여세 추징이 배제되는 사유에 종전에는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

차.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함.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

는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을 추가함.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주식평가 심의대상을 종전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에서 유사상장법인이 있거나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등을 통한 합리적 평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으로 확대함.

카. 상장주식 평가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사유를 종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로 개선함.

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하도록 함.

파.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과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을 추가하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판단할 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에는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및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직무발명보상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국외전출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체험학습비를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스포츠교육기관 등 6개 업종을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함.(안 제16조제1항)
- 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퇴직후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규정함.(안 제17조의3)
- 다.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1인당 보험료 합계액(월적립식보험과 종신형 보험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설정함.(안 제25조)
- 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함.(안 제26조 및 제26조의3)
- 마. 현재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및 소액주주인 상장법인의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액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안 제38조)
- 바.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보는데, 이연퇴직소득의 29 ¼경우 부득이한 사유인 해외이주의 범위를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40조의2)
- 사.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안 제67조)
- 아. 외국정부의 통지 지연 등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을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함.(안 제117조)

자.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안 제118조의6)

차.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118조의6)

1)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한국장학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용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로 함.

2)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생활비 대출 및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금액으로 함.

3) 국세청장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개인별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카. 일시적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의 일부 수용에 따라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55조)

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155조)

파. 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2018년부터 15억원으로, 2020년부터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57조제4항)

하.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안 제159조의2)

거. 비상장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100분의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지분율 기준을 100분의1에서 100분의4로 상향 조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167조의8제1항)

- 너.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상장주식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비상장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주주로 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도록하며 납부유예시 연 1.8%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78조의7부터 제178조의11)
- 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용역으로 함.(안 제179조 및 제207조)
- 러.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자가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현재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및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만 제출하도록 보완함.(안 제201조의10)
- 머. 제207조의4에서 ‘실질귀속자’를 정의하고 약칭(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하던 것을 제207조의2에서 동일하게 정의하고 약칭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207조의2)
- 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용계좌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해야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주체(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보완함.(안 제208조의5)
- 서. 국가보훈처 소속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함.(안 별표 1의2)
- 어. 2017년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4,5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향조정함.(안 별표 2)
- 저.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함.(안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

처.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비율이 의무발급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말에서 2019년말로 3년간 연장하되, 의무교부비율을 2017년과 2018년에는 2016년에 비해 5%p 인상하고, 2019년에는 추가로 5%p 인상함.(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 19)

3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의 채무 출자 전환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며, 접대비 등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을 설정하고 동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며,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 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함.
- 다. 법인이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활용품을 기증한 경우 생활용품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 라.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동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

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함.

- 마.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 바.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 사. 법인이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법인세의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를 합병 분할 현물출자 주식교환 등 모든 적격구조조정으로 확대함.
- 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함.
- 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용역으로 함.
- 차. 제138조의5에서 ‘실질귀속자’를 정의하고 약칭(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하던 것을 제138조의4에서 동일하게 정의하고 약칭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등을 확대·조정하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 감면제도개편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 투자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범위를 현행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52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 나. 창업자인 청년의 범위를 중소기업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을 추가적 요건으로 함.
 - 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 하고, 무상임대 방법 등을 규정함.
 - 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을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기술로 확대·조정하고, 중견·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곱하는 일정배수를 3배로 함.
 - 마. 기업도시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에 대하여 현행 감면한도(투자액의 70%)와 고용인원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감면한도(투자액의 10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출자시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출자하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으로 하고,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함.
 - 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내진보강 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내진보강설비로 규정함.
 - 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판정방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관련 요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공제대상을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제작자 등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하되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지출하는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차.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업종을 현행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49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100분의 1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함.

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가속상각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중견기업 및 설비투자자산의 범위 등을 규정함.

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이 인상되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를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지식기반산업과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등으로 규정함.

파.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자산양도를 통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함.

하.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을 최대주주가 아닌 창업자 또는 발기인까지로 확대하고, 주식 매각 비율을 30%로 하향하며, 재투자 기한을 주식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확대함.

거. 철강 석유화학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적용을 배제하여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함.

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의 감면중단 사유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등 중소기업 유예기간 불인정 사유로 정함.

더.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을 합산할 때,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0으로 간주하도록 함.

러.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직전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지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토지로 받은 경우로서 해당 토지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각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함.
- 버.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분할납부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출, 시설 이전의 방법,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금액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서. 임대주택펀드가 다른 펀드를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액면가액보다 발행가격이 큰 할증발행시 액면가액 합계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 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시 제출서류를 소득확인증명서로 일원화함.
- 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포함하고,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처.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이연 방법,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
- 커. 외국 연·기금이 수동적 동업자로서 국내 PEF에 투자하여 얻은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특례의 적용범위를 국내 PEF가 투자대상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외에 국내 PEF가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확대함.
- 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인 중견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으로 정하고,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축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을 확인하는 경우로 규정함.
- 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공제대상자 중 공급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으로 하고, 매수자는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로 규정함.
- 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면제대상에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를 추가함.
- 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수행기관

을 변경함.

- 노.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도. 정부업무를 대행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체에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단체를 추가함.
- 로. 희귀병 환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육이양증 환자의 치료제범위를 확대함.
- 모.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외국법인 및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명확히 함.
- 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따라 연간 환급한도액 산정기간 개시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각각 연장함.
- 소.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차익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됨에 따라 거래대상 파생상품, 거래방법 등 차익거래의 요건을 규정함.
- 오.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 감면제도 개편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기술, 최소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및 조세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등을 규정함.
- 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계열회사 간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함.
- 초.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금액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가 전통시장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밖의 사업장의 사용금액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32.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세무서장이 세관장에 대하여 체납처분 권한 위탁 시, 그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로 정하고, 전문매각기관을 통한 예술품등의 매각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무서장이 세관장에 대하여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 시, 그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로 함.
- 나. 압류한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는 전문매각기관은 국세청장이 매각경험 등을 감안하여 복수로 지정하고, 세무서장이 지정된 기관 중 1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3.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29. • 마감일자 : 2016. 1. 19.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하고,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과거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연장된 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소득세법」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함.
- 다. 심판청구 절차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 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에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
- 마.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바. 「감사원법」 제33조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충분한 소명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함.
- 사. 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예고 통지하는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아.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선정 시, 조세심판원장은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12. 30. • 마감일자 : 2016. 1. 24.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규정하는 과태료 불복 절차 등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규정과 배치되는 바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막고자 함.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07. 12. 21. 제정)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타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질서법 우선 적용’을 규정함(제5조)

35.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12. 30. • 마감일자 : 2016. 2. 10.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97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16.3.29.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 법령 ‘에서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 ‘으로 축소(‘17.3.30 시행)됨.

따라서 주민번호 수집 없이도 소관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수집으로 개정하는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3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12. 30. • 마감일자 : 2016. 1. 19.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
- 나. 그럼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 초래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 가.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안 제39조 제3항부터 제5항)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12. 30. • 마감일자 : 2016. 2. 8.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등 그간 발표한 정책들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임
-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 허용(안 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성장잠재력 있는 초기기업 발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관리 업무를 허용하여 종합금융투자사

업자가 기업금융에 보다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 행위준칙 마련(안 제77조의6)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영업행위 준칙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예탁금으로 운용하는 자산과 고유재산을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예탁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2배로 제한하여 예탁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예탁자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 기업금융 역량 집중 의무를 부과

2) 종금사에 적용되는 단기자금업무 영업행위 준칙 준용

현재 동일한 업무를 영위 중인 종합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적격기업선정의무, 표지어음 발행시 위험 관리 의무 등의 영업행위 준칙을 동일하게 적용

3) 종합투자계좌 관리의 영업행위 준칙

종합투자계좌와 고유재산을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수탁자간 형평성을 도모하며, 주기적 운용자산 시가평가의무를 부과하여 수탁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금융관련 자산에 수탁자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 기업금융 역량 집중 의무 부과

다. 증권인수인에 대한 책임 강화(안 제135조)

기업공개 주관사와 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재와 같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대표주관사만 책임을 지게하는 대신 선진국과 같이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공유하도록 책임의 범위를 확대

라.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시 증권신고서 면제 범위 확대(안 제137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성화를 도모

마. 합병으로 인한 거래소 지분의 예외적 한도 초과 소유 인정 근거 마련(안 제366조)

거래소 지분 초과보유한도의 예외사유로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3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인)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12. 30. • 마감일자 : 2016. 1. 1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남아있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안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

3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12. 30. • 마감일자 : 2016. 1. 6.
- 산림청에 불법 산림훼손 단속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목재제품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항공본부에 신규 도입 헬기 정비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목재 제품 품질 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산림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산림청 하부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산림청에 2019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복지정책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2017년 1월 27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산림복지시설사업단을 폐지하며, 산림청에 2018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수목원조성사업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9명(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인력을 반영하고, 산림청 하부조직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

정하려는 것임

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12. 30. • 마감일자 : 2016. 1. 9.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390호, 2016.12.20. 공포, 같은 법 시행령은 개정 절차 진행 중)됨에 따라 감면신청자의 증명자료 제출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신청시 제출하는 증명자료와 필요한 관련 서식 등을 정함

41.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12. 30. • 마감일자 : 2016. 2. 8.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14.8)과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 16.3) 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계류장의 범위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시 절차 등을 명확히 적시하여 법령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자체 우발계획 수립·승인시 공항운영자 및 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자체보안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인용조항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안 제12조제1항제2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됨에 따라 현행 무기반입자에게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 나. 보호구역 지정 대상 계류장 범위를 명확화(안 제4조제5호)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계류장 지역 중 항공기 정비 시설 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부대하는 계류장은 제외되도록 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코자 함.

다.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시 절차 등을 명확화(안 제5조제3항 신설)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구역 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라. 자체 보안계획에 자체 우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
명확화(안 제18조의2제3항)

자체 보안계획은 일반문서인 반면, 자체 우발계획은 대외비인 국가항공
우발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비상계획으로 공개시 항공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공항운영자 및 국적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
하는 자체 우발계획은 자체 보안계획과 분리하여 승인 받도록 함으로
써 항공보안 강화를 도모코자 함.

4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1. 2. • 마감일자 : 2016. 1. 3.
- 가. 건축물의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16층 이상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4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1. 2. • 마감일자 : 2016. 1. 9.
-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으로 일부 조항의 근거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어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가.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근거법령 개정(안 제3조, 제9조, 제61조)
 - 1) 개별 회계실체의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 수정
 - 2) 출납 폐쇄기한 내 회계처리의 예외를 반영
 - 3) 출납 폐쇄기한 단축으로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출납 폐쇄기한이 동일
하므로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을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출납사무 완결기한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간략하게 명시
 - 4) 개별 회계실체의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 수정
- 나. 재무제표의 구성 및 체계 정비(안 제8조, 제7장)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재무제표 구성 및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함
 - 2) 지방재정법 개정(‘14.5.28) 및 동법 시행령(’ 14.11.28)으로 통합결산서 체제 구축에 따라 재무제표의 ‘결산총평’ 삭제를 반영
- 다. 사용수익권의 평가·표시방법 명시(안 제49조, 제50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운영되던 사용수익권의 평가와 표시방법을 부령에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함

4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1. 2. • 마감일자 : 2016. 2. 10.
- 국가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며,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22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피해자 등록, 피해자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의료지원금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 등(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임기 2년으로 피해자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학계·법조계 경력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나.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안 제7조)
 - 1) 지금까지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의 규모, 소득수준, 생활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피해자의 수, 피해자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및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상이 파악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피해자 등록(안 제8조, 제9조, 제10조)

1) 원자폭탄피해자가 이 법에 규정한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록이 필요하므로, 피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자격요건)과 등록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를 규정함.

2) 등록자의 사망 등 신상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변동신고를 하도록 하고, 등록증 발급 시 등록 대장 기록 등 등록관리를 강화하였음.

라. 정밀검사 항목(안 제11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정밀검사는 식도·위대장암 등에 대한 악성종양검사 등으로 규정함.

마. 의료지원금 지급 기준(안 제12조)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급요건 및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안 제13조)

국가 등은 위원회 업무, 피해자 등록 및 변동신고, 의료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법에서 제한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4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1. 3. • 마감일자 : 2016. 1. 6.

○ 가. 현장관리인의 현장 이탈 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소규모 건축물에 배치해야 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

4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1. 3. • 마감일자 : 2016. 1. 10.
- 종전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 및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함
- 가.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 나.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정비(안 별지 제7호서식)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 다.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서식)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또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제출 하도록 신설되는 별지 제14호서식(재발급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삭제함

4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1. 3. • 마감일자 : 2016. 1. 10.
- 종전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청을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등기 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시에도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가.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규정 정비(안 제8조)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나.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규정 정비(안 제20조 개정)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등기 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관한 규정을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법인 설립등기 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4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1. 3. • 마감일자 : 2016. 2. 14.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의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지자체 환경보전 계획 변경 시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방법 및 내용 마련(안 제11조의2①항)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공간정보로 제시

2) 축적 5천분의 1 이상 지도에 작성하되, 작성에 한계가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 만5천분의 1 이상으로 작성 가능

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11조의2②항)

1) 기초주제도 제작, 평가항목, 등급 산정 등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다. 지자체 환경보전계획변경시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체화 (안 제8조 및 제9조)

1)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3)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비용을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4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1. 3. • 마감일자 : 2016. 1. 2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사료관리법 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질서법 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 (안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

50.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1. 3. • 마감일자 : 2016. 1. 23.

○ 「식품산업진흥법」 이 일부개정(' 16.12.2. 공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어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가 마련됨.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서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 요건(안 제24조의2 제1항)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요건으로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 확보, 시설과 장비 보유, 정관 등에 주요 사업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함.

나.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24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고하도록 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연구기관 중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업무상황 보고(안 제24조의2 제4항)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매년 1월까지 전년도 업무 수행결과와 해당연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51.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1. 3. • 마감일자 : 2016. 1. 23.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근무복 지급 품목 중 “카디건”을 추가하여 동절기 실내근무 시 복제의 통일성을 높이고, 제복 부속물 중 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 「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라 통일된 정부상징을 적용하려는 것임

○ 가.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근무장의 차림새에 “카디건” 추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조, 제5조, 별표2 개정)

- 1)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에 “카디건”을 추가함
- 2)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근무장의 차림새에 “카디건”을 추가함

나. 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 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른 통일된 정부상징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별 표5 개정)

- 1) 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 통일된 정부상징 적용

5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1. 4 • 마감일자 : 2016. 2. 13.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
- 가. 임신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
- 나.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4조의2 신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승인(안 제7조의3 제2항)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소속 기관의 장은 반드시 승인토록 함
- 라. 육아시간 부여(안 제7조의3 제7항 신설)
생후 1년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 마. 자녀돌봄휴가 도입(안 제7조의3 제8항 신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자녀 돌봄 휴가 부여

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1. 4. • 마감일자 : 2016. 1. 24.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이와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 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고자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

의절차와 과태료 재판 및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

5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1. 4. • 마감일자 : 2016. 1. 24.
-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우선 적용되나, 이와 중복·배치되는 규정이 있어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을 삭제 (안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5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1. 4. • 마감일자 : 2016. 2. 13.
-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장애학생에 대한 20% 제한을 없애 장애학생의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 개정)
 - 1) 학위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4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경우 졸업학점 및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전문대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자율성 저해
 - 2) 전문대학 학사학위과정에서도 이수학점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형평성 및 자율성 제고
- 나.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위심화과정 개설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개정)
 - 1) 학위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개설가능하여 4년

제로 개편된 간호학과는 전공 심화과정 개설 불가능하므로,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하는 규정 삭제

2) 3년제 간호과 졸업생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학사 졸업 간호사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

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사심화과정 입학 제한 해소(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개정)

1)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장애인은 정원 제한없이 입학 가능하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구별 없이 전체 정원의 20% 범위로 제한함에 따라 장애학생의 계속교육에 제한이 있음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없이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부여

라. 학위심화과정 등록 자격 법령 미비 사항 정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58조의4 개정)

1) 고등교육법상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산업체 경력자 및 예외적으로 경력이 없는 자도 가능하나, 시행령 상 등록자격은 산업체 경력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법과 시행령 상충

2) 상충된 법령 미비사항을 정비함

56.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1. 5. • 마감일자 : 2016. 2. 14.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등에 기입해야 하는 설립발기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

○ 가.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안 제3조 제1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

나.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 조항 삭제(안 제13조)

5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1. 5. • 마감일자 : 2016. 2. 1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 14403호, ' 16.12.20. 공포, ' 17.3.2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 교습소 명칭 규정 삭제(제2조제2항)
교습소의 명칭 표시 사항이 법률에 상항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삭제
- 나.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해야할 장부 및 서류 추가(제16조, 별표2, 별지 제24호 서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비치 관리

5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1. 5. • 마감일자 : 2016. 2. 1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 14403호, ' 16.12.20. 공포, ' 17.3.2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 교육감이 위탁하는 연수위탁기관에 교습소연합회 신설(제20조제3항)
- 나.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1조)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5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1. 5. • 마감일자 : 2016. 2. 16.
- 교육부장관의 4급 이상 정원 책정 승인 범위를 정원을 순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등의 보조·보좌기관 직급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도교육청의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가. 과 설치 기준 마련(안 제6조 제4항 신설)
 - 1) 과 설치를 위한 최소 필요 업무량(특별한 경우 제외 12명 이상 정원)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
- 나. 교육지원청 국장 및 과장의 직급기준 마련(안 제11조 제3항 신설)
 - 1) 교육지원청의 국장(4급) 및 과장(5급) 직급을 대통령령에 규정
- 다. 직속기관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신설)
 - 1) 직속기관 기능에 따라 기관을 유형화하고, 하부 기구 설치 기준 마련
 - 2) 행정수요 및 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업무량·규모에 따라 표준화가 가능한 직속기관(교육훈련기관 및 연구정보기관)의 직급기준 설정
 - 3) 소규모 직속기관의 기관장 직급 상한 설정
- 라. 4급 이상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안 제15조의2, 제16조)
 - 1) 4급 이상 정원을 순증할 경우만 승인을 받게 하여 조직 운영의 탄력성 제고

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1. 5. • 마감일자 : 2016. 2. 14.
- 현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만이 설정이 가능하나,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자영업자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적용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확대(안 제17조의2)

1) 현행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가입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으로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를 추가함.

3)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허용하여 본인 추가납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세제혜택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들에게도 세제혜택과 노후재원적립기회를 부여하며, 연금개혁으로 수익비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축소되는 직역연금 가입자에게도 근로자들과 동일한 세제혜택 및 노후재원 적립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6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1. 5. • 마감일자 : 2016. 2. 14.

○ 현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만이 설정이 가능하나,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자영업자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적용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확대(안 제17조의2)

1) 현행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가입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으로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를 추가함.

3)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허용하여 본인 추가납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세제혜택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들에게도 세제혜택과 노후재원적립기회를 부여하며, 연금개혁으로 수익비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축소되는 직역연금 가입자에게도 근로자들과 동일한 세제혜택 및 노후재원 적립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6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1. 6. • 마감일자 : 2016. 2. 15.

○ 아동복지법 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를 범죄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등에 제공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제공 관련 추가(안 26조의2제2항)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한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규정함

나. 민감정보 관련 처리기준 추가(안 제57조제2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63.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1. 6. • 마감일자 : 2016. 2. 15.

○ 대학의 역량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정원 조정 시 상호조정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조정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대학 구조개혁 등의 평가결과 각 등급별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제6항)
- 나. 상·중·하위권 등급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대학에 대하여 상호 조정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학사과정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하는 대상을 석사과정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함(안 제2조의 3제 6항 별표 1의6)
- 다.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을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 학과(전공) 신설기준에 준하여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제1항 별표 1의2)

6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1. 6. • 마감일자 : 2016. 2. 15.
-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시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위촉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하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예방·대비 업무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 가.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안 제4조제2항)
- 나.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예방·대비 업무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명확화(안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 다.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현행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 삭제)

6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1. 6. • 마감일자 : 2016. 2. 15.
-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통행가능한 차종이 세분화되어 있어 운

전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워 대형 저속 차종은 우측 부분의 차로, 소형 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1차로는 2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해당 차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체 시에도 1차로를 통행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속도가 도로의 최고속도 이하인 경우에는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교통소양교육 대상자가 감소하여 교육 횟수가 줄어들어 따라 교육을 희망하는 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소양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고속도로 1차로의 통행기준 완화 (안 별표 9)
 - 1) 2차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경우 대형 및 저속 차종의 경우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소형 및 고속 차종의 경우 모든 차로로 통행 가능하도록 함.
 - 2) 고속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1차로(2차로가 통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에서 최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나.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된 자 이외의 교통소양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6시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교육 내용을 운전 유형 진단 교육 등 자기 주도적 교육 위주로 구성함(안 별표16 제2호 나목).
- 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90호 서식)

66.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1. 6. • 마감일자 : 2016. 2. 15.
-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관계자의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처벌 규정을 강화
 - 공공공사 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규정 신설 등 건설기술 육성 제도 내실화를 통해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고 민간차원의 건설신기술 개발 여건 개선 등

67.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1. 6. • 마감일자 : 2016. 2. 17.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간부의 경우 군에서 계속 복무 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군인사법 제14조, 동 시행규칙 제53조의3)하고 있으나, 병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도 군에서 계속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방부의 기본입장과 국가안보에 있어 간부와 병사의 차이가 없음을 고려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가 희망시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부사관 임용관련 조항에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추가(안 제14조제5항 신설)

6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인)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1. 6. • 마감일자 : 2016. 1. 26.
- 저출산 극복 및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임을 확대하려는 것임
- 승진부담 없이 육아와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최저승진 소요연수 산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안 제5조제2항)

69. 「시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1. 6. • 마감일자 : 2016. 2. 15.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가. 법령의 한글화 법령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互選”을 “호선(互選)”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併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양양”을 “높임”으로, “폐질”을 “장애”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게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게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